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 안 감 사 자 료

경 제 개 발 국
환 경 위 생 과

목 차

- (우)정육리싸이클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업무처리현황

【붙임자료】

- 원주지방환경청,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관련 타법 저축요부 등 검토의뢰 공문
- 음성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관련법 검토의견 회신 공문
- 원주지방환경청,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보완에 따른 검토 요청 공문
- 음성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보완서류 검토결과 회신 공문
- 원주지방환경청,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 알람 공문

(주)정육리싸이클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업무처리현황

작성자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인)
 확인자 환경위생과장 代) 최윤복 (인)

대표자	소재지	업종	처리대상폐기물	업무처리현황	비고
오봉호	맹동면 봉원리 22-6, 22-7, 22-8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 2017. 8.9. 원주지방환경청, 폐기물사업 계획서 검토의뢰 ○ 2017. 8.25. 계획서 검토의견 회신 ○ 2017. 9.22. 원주지방환경청, 보완서류 검토의뢰 ○ 2017.10.12. 보완서류 검토의견 회신 ○ 2017.11.21. 원주지방환경청,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 ※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을 동일한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도 지정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에 의해 처리됨
- 지정폐기물 허가권자: 환경부장관(원주지방환경청장)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4항 및 제32조제1항
- ※ 상기업체는 폐기물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전기 생산을 하기 위하여 2016. 2. 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음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수신 음성군수(환경위생과장)

(경유)

제목 [(주)정육리싸이클링]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관련 타법 저촉여부 등 검토의뢰

1. 관련 근거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 '17.6.27.)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2항 및 제32조

2. (주)정육리싸이클링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타법 저촉여부와 배출시설 설치 관련여부 등을 검토의뢰하오니 민원 서류임을 감안하여 '17.8.2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호 명 (대표자)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업 종	검토 내용
(주)정육리싸이클링 (오봉호)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22-6번지 외 2필지	중간처분업 (소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 저촉여부 -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여부 - 배출시설 설치 관련 적정여부

붙임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1부(별송).

2. 참고자료(폐기물 성분조성 자료) 1부(별송).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원주지방환경청장



주무관 김수진 주무관 장무근 환경관리과 전결 2017. 8. 9.
과장 신유근

협조자

시행 환경관리과-2860 (2017. 8. 9.) 접수 환경위생과-41244 (2017. 8. 9.)

우 26461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반곡동, 원주지방환경청) / <http://www.me.go.kr>

전화번호 033-760-6051 팩스번호 033-765-0129 / su0529@korea.kr / 비공개(5,7)

폐기물처리 [●] 사업 [] 사업변경 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20일)
------	-----	------	-------------------------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주)정옥리싸이클링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03-81-46578
	③ 주소(사무실)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22-6번지 외 2필지	(전화번호 : 043-883-0551)

사업 개요	④ 상 호(명칭) : (주)정옥리싸이클링	⑥ 사업자등록번호 : 303-81-46578
	⑤ 업 종 : 폐기물중간처분업	
	⑦ 영업대상 폐기물 : 별 첨	
	⑧ 영 업 구 역 : 전 국	
	⑨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22-6,7,8	
	⑩ 사무실 예정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22-6번지 외 2필지	
	⑪ 사업착수 예정일 : 2017년 12월	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 2019년 11월 일

⑬ 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별 첨		별 첨	
	변경 전		변경 후	
⑭ 변경사항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 사업
[] 사업변경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7년 08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영향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영향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로 없음
------	--	-----------

【 활력 있는 복지 음성 】



음 성 군



수신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관련법 검토의견 회신[(주)정육리싸이클링]

1.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2860(2017.8.9.)호 관련됩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주)정육리싸이클링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관련법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관련법 검토의견서 1부. 끝.

음 성 군 수

주무관 남태현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경제개발국장 허금 전결 2017. 8. 25.

협조자

시행 환경위생과-44115

접수

우 2769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을 중앙로 173 (음성군청)

/ <http://www.eumseong.go.kr>

전화번호 043-871-3802

팩스번호 043-871-1919

/ lkjadsf@korea.kr

/ 비공개(5)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타법 검토의견서

[폐기물 중간처분업]

※ 검토결과 “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조항 및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 호	(주)정옥리싸이클링	2. 대표자	오봉호
3. 설치 예정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22-6번지 외 2필지		
4. 영업대상 폐기물	지정폐기물(폐유, 그 밖의 폐유기용제), 사업장일반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 그 밖의 폐섬유, 폐지류, 폐목재류, 유기성오니류, 무기성오니류)		
5. 타 법 저촉여부 검토			
관련법규	검 토 내 용 (관련 법조항 및 검토의견)	검토부서 (검토자)	결 과 (가, 부)
환경영향평가법	법 제43조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업의 허가, 승인 등 전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환경위생과 (안상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함	환경위생과 (안상진)	
자연환경보전법	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대상(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인·허가 내용을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환경위생과 (김명희)	
국·공유재산 (하천)관련법	저촉사항 없음	안전총괄과 (이용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촉사항 없음	안전총괄과 (이용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촉사항 없음	안전총괄과 (권구한)	
하천법	저촉사항 없음	안전총괄과 (엄태헌)	
소하천정비법	저촉사항 없음	안전총괄과 (엄태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 없음	안전총괄과 (엄태헌)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저촉사항 없음	안전총괄과 (최현국)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저촉사항 없음	안전총괄과 (신동훈)	

관련법규	검 토 내 용 (관련 법조항 및 검토의견)	검토부서 (검토자)	결 과 (가, 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 없음	안전총괄과 (신동훈)	
농어촌정비법	저촉사항 없음	산업개발과 (김덕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 없음	산업개발과 (김성호)	
도시개발법	저촉사항 없음	산업개발과 (김성호)	
택지개발촉진법	저촉사항 없음	산업개발과 (김성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산업개발과 (고지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및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일반소각 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 물의 경우에는 10톤)미만 시설인 경우 반 드시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제25호 발전 시설일 경우 저촉사항 없음	도시과 (오영진)	
건축법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설 계변경) 대상임	건축허가과 (오성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시 행령 제53조 3호 다에 의거 개발행위대상 이 아님.(단 건축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이외의 성토 및 절토 등 토지형질변경 행 위가 없어야 하며 있을 경우 개발행위허 가를 득할 것)	건축허가과 (이문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경제과 (김성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연간 5천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또는 연간 2 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실시 또 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함	경제과 (유승유)	

관련법규	검 토 내 용 (관련 법조항 및 검토의견)	검토부서 (검토자)	결 과 (가, 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사업지에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여건 등으로 보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능한 고효율 인증제품을 사용을 권고함	경제과 (유승유)	
전기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 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100kw 초과 ~ 3,000kw 이하 허가권자는 충청북도임)	경제과 (유승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사업 구분과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2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 업은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 을 제외한 열 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 로칼로리 이상일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 거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 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경제과 (유승유)	
도로법	기 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할 것	건설교통과 (신길수)	
사도법	해당사항 없음	건설교통과 (신길수)	
국유재산법	해당사항 없음	건설교통과 (황주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당사항 없음	건설교통과 (황주원)	
농어촌도로정비법	해당사항 없음	건설교통과 (박상일)	
주차장법	해당사항 없음	건설교통과 (유종석)	
하수도법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 34조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 으로 설치 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수도사업소 (이재원)	
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저촉사항 없음	수도사업소 (이성호)	
수도법	상수도 관련 사항이 없으므로 저촉사항 없음 용수공급에 관한 사항은 기협의조건(수도 사업소-33283호(2016.10.21.)을 준수할 것)	수도사업소 (박종구)	

관련법규	검 토 내 용 (관련 법조항 및 검토의견)	검토부서 (검토자)	결 과 (가, 부)
지하수법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0 00규정에 의거 일일양수 능력이 100톤 초과시 허가, 그 이하시 신고하여야 함	수도사업소 (서영택)	
농지법	신청지는(맹동면 봉현리22-6, 22-7, 22-8번지 / 공장용지 / 13,137m ²)는 2001.05.30. 산36번지에서 등록전환된 부지로 농지법 해당사항 없음	농정과 (이동우)	
산지관리법	맹동면 봉현리 22-6번지 외 2필지 해당사항 없음(지목 "장")	산림녹지과 (최규환)	
축산법	저축사항 없음	축산식품과 (최창규)	

6.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관련법규	검 토 내 용 (관련 법조항 및 검토의견)	검토부서 (검토자)	결 과 (가, 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으로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나, (주)정옥리싸이클링의 입지여건으로 사업예정지 주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이 대부분으로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지방2급 하천인 한천이 있고 미호천으로 합류되어 금강으로 흐르고 있으며, 반경 2km 이내에는 맹동면 봉현리, 금왕읍 유포리·삼봉리·유촌리, 대소면 부윤리·성본리·수태리가 위치에 있고 향촌, 한삼, 새터 등 25여개의 자연마을에 약 2,2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또한, 사업예정지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지점에 부윤초등학교, 무궁화아파트, 한미금강아파트, 북동쪽으로 약 3.3km 지점에 오선초등학교,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점에 충북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으며,	환경위생과 (남태현)	

6.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관련법규	검 토 내 용 (관련 법조항 및 검토의견)	검토부서 (검토자)	결 과 (가, 부)
폐기물관리법	(주)정육리싸이클링의 사업예정지는 농경지와 촌락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사업예정지 진입로가 경사져 있고 폭이 좁으며 주변도로가 2차선이고 인근 마을 진입로가 맞은편에 있어 대형 폐기물수집 운반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게 될 경우 소음, 분진,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혁신도시 및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주)정육리싸이클링의 사업예정지는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입주 할 수 없는 지역이면서 주변에는 아파트, 학교, 25여개의 자연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고 주민들 대다수가 인근 농경지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 수은 등과 같은 중금속,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써 소량으로도 인체, 농작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주)정육리싸이클링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가스량이 많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총량은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중금속, 다이옥신 등은 인체, 토양, 지하수 등에 축적되는 성질에 때문에 폐기물소각시설이 가동할 때 주변 농경지, 토양 등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7. 배출시설 설치 관련 검토

관련법규	검 토 내 용 (관련 법조항 및 검토의견)	검토부서 (검토자)	결 과 (가, 부)
대기환경보전법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으로 시설 설치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 설치·운영 등 적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환경위생과 (남태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으로 시설 설치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발생 폐수 전량 위탁처리)	환경위생과 (남태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수신 음성군수(환경위생과장)

(경유)

제목 [(주)정육리싸이클링]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보완에 따른 검토 요청

1. 관련 근거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 '17.6.27.)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2항 및 제32조

다. 환경관리과-2861('17.8.9.)호

2. (주)정육리싸이클링에서 보완·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에 대한 의제처리를 위해 검토를 의뢰 하오니 민원 서류임을 감안하여 '17.10.1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호 명 (대표자)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업 종	검토 내용
(주)정육리싸이클링 (오봉호)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22-6번지 외 2필지	중간처분업 (소각)	-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여부 - 배출시설 설치 관련 적정여부

붙임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보완) 1부(별송).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원주지방환경청장



주무관 주무관 환경 관리 과 전결 2017. 9. 22.
조정환 장무근 과장 신유근

협조자

시행 환경관리과-3498 (2017. 9. 22.) 접수 환경위생과-50109 (2017. 9. 23.)

우 26461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960(입춘로 65) 원주지방환경청 환경 / http://www.me.go.kr
관리과

전화번호 033-760-6051 팩스번호 033-765-0129 / chocho37@me.go.kr / 비공개(5,7)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수신 (주)정육리싸이클링(우27679 충북 음성군 맹동면 초금로 415-14
(경유)

제목 [(주)정육리싸이클링]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재보완 요구

귀사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 불임과 같은 미비 사항이 있어 재보완을 요구하오니 '17. 10. 13.(금)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재보완 요구내용 1부. 끝.

원주지방환경청장



주무관

김수진

주무관

장무근

환경관리과 전결 2017. 8. 29.

과장

신유근

협조자

시행 환경관리과-3112

(2017. 8. 29.)

접수

우 26461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반곡동, 원주지방환경청)

/ <http://www.me.go.kr>

전화번호 033-760-6051

팩스번호 033-765-0129

/ su0529@korea.kr

/ 비공개(5)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재보완 요구내용

【(주)정육리싸이클링】

1. 폐유·그 밖의 폐유기용제(고상) 보관시설의 경우 법적 기준(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을 충족할 수 있는 규모를 제시하여야 함
 - 보관시설 전체 규격(5,500W×10,500L×5,000H)만 제시된 바, 허용보관량 이내로 높이 제시
 2. 폐유·그 밖의 폐유기용제(액·고상) 보관시설의 경우 소각시설의 투입구와 이격되어 위치하는 바, 보관시설에서 소각시설까지 운반 및 투입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운반 및 투입과정에서 폐기물의 누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3. 버너 필요용량을 1,413,869kcal/hr로 산정하고 여유율을 고려하여 7,000,000kcal/hr (3,500,000kcal/hr×2sets)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는 필요용량 대비 5배의 용량으로 과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 용량의 버너 사양을 재검토·제시하여야 함
 4. 소각시설 설치기준 및 세부검사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1, 2차 연소실 용적 확인을 위하여, 1, 2차 연소실의 범위가 구획된 상세 도면을 제시하되, 도면에는 연소실의 용적 산정영역을 표시하고 연소실 용적 산출식을 함께 제시
 - 2차 연소실 가스 체류시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공기공급노즐, 연소실 출구온도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상세 도면 제출
- 폐기물처분시설(일반소각시설) 설치기준
-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 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 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 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5. 폐기물 보관시설에서 악취 발생이 예상되므로, 보관시설의 밀폐여부, 소각시설 압입송풍기 용량 및 가동 중지예 따른 악취 저감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6. 폐기물 보관시설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계획을 재검토·제시하여야 함
 -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39호, ‘16.12.22.)”에 따라 카메라의 설치 대상위치 및 수량 등으로 설치
7.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재검토·제시하여야 함
 - ‘연소실 최종 출구온도 측정공 설치 및 온도지시계·기록계 부착’ 계획과 관련하여, 열전대 설치 위치가 설치계획이 없는 방지시설(SDR)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측정공 및 기록계 등의 설치 위치 및 사양 등을 재검토·제시
 - ‘소각재의 제거 시 재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하여, 설치기준에 적정한 세부 구조 및 설비계획을 검토·제시
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조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조사항목에서 ‘푸란’이 누락됨
 - 악취는 여름(6~8월)에 1회 이상 측정하고, 지표수는 폐수 유출이 우려될 경우 측정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과는 별개로,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임
9. 소각대상 폐기물의 성분조성 예측자료와 실제 운영 시 폐기물의 조성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 시 적정 운영과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에서 시설 설치내용이 상이하게 제시되어 있고, 방지시설의 세부 설계내용에도 아래와 같은 상당한 오류가 있으므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산출 자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제시하여야 함
 - 방지시설의 구성은 사업계획서 53쪽의 방지시설 처리공정도(SNCR→DR→BF→SCR→ID Fan→WS→Stack), 54~70쪽의 방지시설 설계 내역서(SNCR→DR→BF→SCR→WS→ID Fan→Stack), 설계 도면(SNCR→DR→BF→ID Fan→WS→Stack *SCR없음)에서 서로 상이하게 제시됨

- 사업계획서 54~66쪽의 방지사설별 설계 내용과 71쪽의 종합 내용에서 방지사설 효율이 상이하게 제시됨
 - 먼지의 경우 방지사설별 설계 내용에서 인입·배출가스량에 오류가 있으며, 배출농도 산정 결과도 틀림
 - 열정산 자료에 의하면, 수관식 보일러의 출구온도는 215℃ 이나, 수관식 보일러 후단의 건식반응시설의 입구온도는 170℃로 산정되었으므로, 대기오염방지사설별로 열정산 온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여과집진시설의 인입온도는 153℃ 이고 후단에 설치하는 SCR의 인입온도는 200℃ 이나, 설계 계산서 및 도면에는 배출가스를 승온하기 위한 설비를 확인할 수 없음
 - SNCR의 먼지 제거효율은 45.61%로 산정하였으나, SNCR은 요소수(또는 암모니아수)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환원시켜주는 시설로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님
 - 건식반응시설의 먼지 제거효율을 10%로 산정하였으나, 건식반응시설은 소석회 및 활성탄을 분무하는 시설로서 분말상의 약품에 의해서 먼지가 증가되는 시설이므로, 동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 재검토·제시
 - SCR의 경우 촉매의 유형, 주입 암모니아량, 적정 운전 온도범위, 처리 효율 등을 검토하고, 설계 도면과 함께 세부 설계내역 자료를 제시
11. 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 처리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자료에는 세차시설 폐수에 대한 내용이 없음
12. 토지이용계획도(배치도)상 사업부지 면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13. 상기 보완요구 내용을 검토·반영함으로써 법적 설치기준 검토, 기본 설계 내역(소각설비, 방지사설 내역, 오염물질 배출농도, 약품 사용량, 관련 도면 등 포함)에 상당 부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내용 포함*)를 전면 수정·제출하여야 함
- *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폐수배출 시설 설치신고가 의제처리됨
- 보완요구 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된 부분을 표시(파란색 글씨 등). 끝.

【 활력 있는 복지 음성 】



음 성 군



수신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보완서류 검토결과 회신[(주)정육리싸이클링]

1.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3498(2017.9.22.)호 관련됩니다.
2. (주)정육리싸이클링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보완서류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음 성 군 수

주무관

남태현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환경위생과장

전결 2017. 10. 12.

문근식

협조자

시행 환경위생과-52630

접수

우 2769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 <http://www.eumseong.go.kr>

전화번호 043-871-3802

팩스번호 043-871-1919

/ lkjadsf@korea.kr

/ 비공개(5)

【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10.30. - 11.03.)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폐기물 중간처분업]

※ 검토결과 “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조항 및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 호	(주)정옥리싸이클링	2. 대표자	오봉호
3. 설치 예정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22-6번지 외 2필지		
4. 영업대상 폐기물	지정폐기물(폐유, 그 밖의 폐유기용제), 사업장일반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 그 밖의 폐섬유, 폐지류, 폐목재류, 유기성오니류, 무기성오니류)		
5.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관련법규	검 토 내 용 (관련 법조항 및 검토의견)	검토부서 (검토자)	결 과 (가, 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으로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나, 사업예정지의 반경 2km 이내에는 향촌, 한삼, 새터 등 25여개의 자연마을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예정지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지점에 부운초등학교, 무궁화아파트, 한미금강아파트, 북동쪽으로 약 3.3km 지점에 오선초등학교,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점에 충북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음. 또한, (주)정옥리싸이클링의 사업예정지는 주변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사업예정지 진입로가 경사져 있고 폭이 좁으며 주변도로가 2차선이고 인근 마을진입로가 맞은편에 있어 대형 폐기물수집운반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게 될 경우 소음, 분진,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주)정옥리싸이클링의 사업예정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입주 할 수 없는 지역이면서 주변에는 아파트, 학교, 25여개의 자연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고 주민들 대다수가 인근 농경지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위생과 (남태현)	

관련법규	검 토 내 용 (관련 법조항 및 검토의견)	검토부서 (검토자)	결 과 (가, 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 수은 등과 같은 중금속,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써 소량으로도 인체, 농작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주)정옥리싸이클링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가스량이 많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총량은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중금속, 다이옥신 등은 인체, 토양, 지하수 등에 축적되는 성질에 때문에 폐기물소각시설이 가동할 때 주변 농경지, 토양 등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6. 배출시설 설치 관련 검토

관련법규	검 토 내 용 (관련 법조항 및 검토의견)	검토부서 (검토자)	결 과 (가, 부)
대기환경보전법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으로 시설 설치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발생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	환경위생과 (남태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으로 시설 설치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발생 폐수 전량 위탁처리)	환경위생과 (남태현)	



원주지방환경청

수신 음성군수(환경위생과장)

(경유)

제목 [㈜정육리싸이클링]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알림

1. 관련 문서

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2860호(2017. 8. 9.), 3498호(2017.9.22.)

나. 음성군 환경위생과-44115호(2017. 8. 25.), 52630호(2017.10.12.)

2. ㈜정육리싸이클링(대표자 오봉호)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적합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적합 통보 시 타법 저촉여부 및 배출시설 관련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서 1부. 끝.

원주지방환경청장



주무관	조정환	주무관	장무근	환경 관리과 전결 2017. 11. 21. 과장 신유근
협조자				
시행	환경관리과-4320	(2017. 11. 21.)	접수	환경위생과-60550 (2017. 11. 21.)
우 26461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960(입춘로 65)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http://www.me.go.kr			
전화번호	033-760-6051	팩스번호	033-765-0129	/ chocho37@me.go.kr / 비공개(5,7)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내용

- 업소명(대표자) : (주)정육리싸이클링(오봉호)
-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22-6, 22-7, 22-8 (13,137㎡)
- 업종 : 폐기물 중간처분업(일반소각)
- 영업대상 폐기물 : 지정(8톤/일), 지정 외(57톤/일)
 - 지정(고·액상) : 폐유, 그 밖의 폐유기용제
 - 지정 외(고상) :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 그 밖의 폐섬유, 폐지류, 폐목재류, 유기성오니류, 무기성오니류
- 처분시설 : 일반소각시설 2.71톤/시×1기(65톤/일, 연속식)
 - (설계치) 저위발열량 5,000kcal/kg, 1차 연소로 86.4㎡, 2차 연소로 90.5㎡
 - (방지시설) ① SNCR 2,440㎡/min → ② 건식반응탑 841㎡/min → ③ 여과 집진기 852㎡/min → ④ SCR 958㎡/min → ⑤ 습식세정탑 942㎡/min
- 보관시설(30일 보관량 기준, 지정 외는 12일)
 - 액상 : 폐유 Φ3m×3.4mH(22㎡), 그 밖의 폐유기용제 Φ3m×3.55mH(23㎡)
폐유·그 밖의 폐유기용제(드럼 416개) 4.7mW×20.4mL×3mH(287.6㎡)
 - 고상 : 폐유·그 밖의 폐유기용제 5.5mW×10.5mL×5mH(288.7㎡)
지정 외 폐기물 14mW × 15mL × 7.081H(1,487㎡)
 - 허용보관량 : 폐유(액상 60톤, 고상 60톤), 그 밖의 폐유기용제(액상 60톤, 고상 60톤)
지정 외 폐기물(684톤)
 - ※ 비중 : 폐유(액상 0.98, 고상 0.6), 그 밖의 폐유기용제(액상 0.9, 고상 0.6), 지정 외 폐기물(0.46)
- 실험실, 실험기기 : 위탁 계약 체결

- 주차장, 수집·운반차량 : 해당사항 없음(임차계약 체결)
-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6.1mW×8.5mL) 시설 설치
- 계량시설 : 50톤/회(1식), 기술능력 : 대기환경기사 1인 채용

□ 적합통보 조건

- 동 사업계획 적합통보 사항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일반소각) 허가신청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우리 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상호,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처분시설의 처분용량, 허용보관량 변경 등 당초 적합통보 받은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이 미달되어서는 아니됨
- 허가신청에 필요한 사항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외의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타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절차 이행 사항은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관련 자료 제시

※ 동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통합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기존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아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관련 자료 제시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동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귀 사의 책임 하에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공익상 필요 시 본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음. 끝.